

# 한국전자인증(주) 공인인증기관

## 전자서명법

- I. 전자서명법
- II.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 III. 전자서명법 시행령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7·1]]

###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기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키"라 함은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9.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인증역무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10. "인증관리체계"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자신의 전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비대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시행일 99·7·1]]

### 제 3 조 (전자서명의 효력)

① 공인인증기관이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시행일 99·7·1]]

### 제 4 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7·1]]

### 제 5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시행일 99·7·1]]

### 제 6 조 (인증업무준칙)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인증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 99·7·1]]

#### **제 7 조 (인증역무의 제공 등)**

-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99·7·1]]

#### **제 8 조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 전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아야 한다.
- ②공인인증기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9 조 (인증업무의 양수 등)**

- ①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행일 99·7·1]]

#### **제 10 조 (인증업무의 휴지·폐지 등)**

- ①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 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 월을초과할 수 없다.
- ②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 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보호센터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7·1]]

#### **제 11 조 (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전자서명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이 제 5 조제 1 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 7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6.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 10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 17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 18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오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99·7·1]]

## 제 12 조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 월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 월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 10 조제 4 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7·1]]

## 제 13 조 (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2 조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가입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 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99·7·1]]

## 제 14 조 (검사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관리체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15 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 3 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당해 인증서에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16 조 (인증서의 효력)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제 2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센터가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보호센터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99·7·1]]

#### **제 17 조 (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 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18 조 (인증서의 폐지)**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4 장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 **제 19 조 (인증관리체계의 운영)**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20 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행일 99·7·1]]

#### 제 21 조 (전자서명생성키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때에는 보호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보호센터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된 인증서는 폐지된 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된다.

⑤보호센터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때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22 조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 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23 조 (전자서명생성키의 보호 등)

①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99·7·1]]

#### 제 24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거나 당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99·7·1]]

#### **제 25 조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센터는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 전자서명인증기술의 개발 및 보급 기타 전자서명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제 3 조, 제 6 조, 제 7 조, 제 15 조 내지 제 19 조, 제 22 조 및 제 28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센터"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 [[시행일 99·7·1]]

제 26 조 (배상책임)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시행일 99·7·1]]

### **제 5 장 보칙**

#### **제 27 조 (상호인정)**

①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28 조 (요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 99·7·1]]

#### 제 29 조 (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 제 30 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일 99·7·1]]

### 제 6 장 벌칙

#### 제 31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1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키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 23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시행일 99·7·1]]

#### 제 32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2 조제 2 항(제 25 조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 24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3. 제 24 조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시행일 99·7·1]]

#### 제 33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1 조 또는 제 32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99·7·1]]

### 제 34 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6 조(제 25 조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 7 조(제 25 조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 10 조제 3 항 또는 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 2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99·7·1]]

### 부칙

이 법은 1999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 서명법 시행규칙

제 정 1999. 8.12

정보통신부령 제 81 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전자서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영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

제 3 조(공인인증기관지정서) 영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조(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5 조(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영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제 6 조(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①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인증업무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②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도,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인증업무의 휴지 등의 신고)

법 제 10 조제 1 항 전단 또는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인증업무(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서

2.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인수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3. 가입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인인증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 8 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

법 제 10 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 조(행정처분)

- ① 법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0 조(준용규정)

- ① 제 6 조제 3 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2.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3. 법 제 10 조제 3 항 본문 및 법 제 12 조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 ② 제 8 조의 규정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11 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등)

- ① 법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 과 같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 분의 1 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12 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 13 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13 조의 2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 15 조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시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실지명의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 13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 1 항제 1 호 및 제 13 조의 3 제 1 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시행일 2006.7.1]]

1. 제 13 조의 3 제 1 호에 따른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④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 [본조신설 2002.7.11]

제 13 조의 3 (신원확인증표) 제 13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 13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증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제 13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다.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라. 외국인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

#### 2. 법인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부등본,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사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 1 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 13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신원확인증표

[본조신설 2002.7.11]

제 13 조의 4 (보호조치) ①공인인증기관이 법 제 18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조치
2.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제 13 조의 5 (정기점검)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 1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 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 년에 1 회씩 받아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의 준수여부

2. 제 13 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02.7.11]

제 13 조의 6 (대행비용지원) ①법 제 26 조의 3 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지원방법·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7.11]

제 13 조의 7 (시범사업)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26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서명의 이용확산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등 인증업무 효율화 사업

3.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전자서명기술의 실용화 사업

5. 그밖에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02.7.11]

제 13 조의 8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27 조제 2 항에 따라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불만 등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

2. 접수된 민원내용 중 공인인증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해당 공인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06.6.30] [[시행일 2006.7.1]]

제 14 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 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시행일 2006.7.1]]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 13 조의 5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 년 6 월 30 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5 조제 1 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4.7.6. 정보통신부령

제 151 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자 서명법 시행령

제 정 1999. 6.30

대통령령 제 16457 호



부 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정의)

제 1 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공인인증기관지정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4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 2 조제 10 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관리체계(이하 "인증관리체계"라 한다)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조(지정기준)

①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 2 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인증관리체계 운영인력 12 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것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인증관리체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하여 보호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 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관리를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키 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다. 인증서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을 위한 설비

마. 인증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②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인증업무의 독립성)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및 합병 신고의 수리

2. 법 제 10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휴·폐지 신고의 수리

3. 법 제 10 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실 신고의 수리

제 6 조(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3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